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관내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의 사용년한 증대 및 가연성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소각대상 폐기물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성주군에서 직접 수집·운반한 가연성폐기물
- 성주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한 가연성폐기물
-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 타당한 폐기물
- 비가연성 생활폐기물, 처리능력 초과분 및 소각시설 중지시 폐기물은 매립

○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방법(안 제5조) : 직접운영, 민간위탁운영

- 민간위탁운영 자격
 - 한국환경자원공사
 - 당해 소각시설 시공한 자
 -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
 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
-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·운영

○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
- 사전 승인없이 처리시설 구조변경 불가하며 임의 변경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 배상
-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 실시

○ 위탁 운영비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- 위탁운영비는 위탁자 부담으로 하고 수탁자 청구에 의하여 지급
- 월별 지출내역서,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 결산서 작성 제출

4. 관련법령

○ 폐기물 관리법

○ 지방자치법

5. 검토의견

○ **제출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가연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 일원에 설치한 소각시설이며

○ 소각 대상 폐기물은 군수가 직접 수집·운반한 폐기물, 위탁 계약한 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,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로 제한하였습니다.

○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은 군수가 운영하되, 필요시 한국환경자원공사,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, 군수가 관리·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것으로,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위배 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제13조에 의한 소각여열 이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한 군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